

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5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□ 개정이유

-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-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시금고 중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“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”과 같음	○ “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”과 같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16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시금고 중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 (안 제3조)

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시중 금융기관"을 "시금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운영·관리) ③기금은 안전하고 이자	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.....

수익이 높은 신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
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
관리·운용한다.

.....신금고.....
.....
.....